
산지위판장(수산물)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 관련
실험보조인력 용역

과업지시서

2026. 4.

산지위판장(수산물)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 보조인력 용역 과업지시서

I 배경 및 목적

- 가.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추진의 산지위판장(수산물) 방사능 검사 시 수산물 시료의 전처리(절단, 분쇄, 포장 등)에 활용할 목적
- 나. 파견인력 활용으로 사업 운영 전담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업관리의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

II 과업 개요

- 가. 과업명 : 수산물 시료 방사능 분석 실험 보조인력 용역
- 나. 과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
- 다. 파견인원: 2명
- 라. 근로조건 : 주6일 근무(월 ~ 토), 10시간/일(근로시간 00시 ~ 10:00)
 - ※ 위판 전 산지위판장 수산물 시료의 방사능 분석으로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가 필요
- 마. 근무장소: (재)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3층 실험실
(주소: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, 첨단바이오융합센터)
- 바. 과업임무
 - 수산물 시료의 가식 부분 분리 및 분쇄
 - 분쇄 시료의 중량 측정 및 분석 용기(Marinelli Beaker) 이입
 -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사 및 폐기물 정리
 - 실험 공간 정돈 및 시료 분류 등 분석 준비 보조작업

Ⅲ 과업수행 범위 및 내용

1. 요청내용 및 과업내용

- 가.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파견 근로자 운영
- 나. 파견인력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계약 종료, 교체, 해지 등 인력 변동 사항에 대하여 우수인력의 적기 배치 및 체계적 관리 등
- 다. 근무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복지 등을 통한 중도퇴사 예방 방안 마련

2. 파견 업체 업무

- 가.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(재)포항테크노파크를 “발주기관”이라 하고, 과업수행자를 “계약상대자”라고 한다.
- 나. “계약상대자”는 인력투입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“발주기관”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① 착수계
 - ② 산출내역서(4대보험 반영, 세부사항 기재)
 - ③ 용역수행계획서(갑작스런 인력 퇴사시 대체인력 구성계획 포함)
 - ④ 보안각서, 비밀유지서약서
 - ⑤ 기타 “발주기관”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
- 다.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 체결 후 투입될 파견인력들의 이력서를 계약 체결 후 “발주기관”에 제출하여야 하고, 투입될 파견인력은 과업지시서 근로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(제)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“발주기관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라. “계약상대자”의 파견인력이 업무 수행 중 근무규칙에 위반하고 이에 대한 “발주기관”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와 본 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“발주기관”이 판단한 경우, “발주기관”은 동 사실을 “계약상대자”에게 통보하며 “계약상대자”는 자신의 책임으로 동 파견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한다.

마.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파견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.

바. 본 과업의 수행은 “발주기관”이 지정하는 운영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사. “발주기관”의 사정으로 업무가 추가 될 수 있다.

IV 근로자 선정 요건

1. 과업수행 필요기술 및 인원

분야	자격 및 우대 요건	인원 수
○ 수산물 방사능 시험·분석 사업 보조	○ 수산물 재료 취급 경험 ○ 한글, MS오피스 가능	2명

2. 직무기술서(업무범위)

핵심직무	○ 수산물 방사능 시험·분석 사업보조
직무수행 내용	○ 수산물 방사능 시험·분석 사업 시료 운반 ○ 수산물 방사능 시험·분석 사업 시료 전처리 및 시료 제조 ○ 수산물 방사능 시험·분석 사업 분석 시료 식별표시 등 ○ 수산물 방사능 시험·분석 사업 분석결과 RawData 산출 등 ○ 수산물 방사능 시험·분석 사업 실험실 정리정돈 및 사업 기타 업무 보조
필요지식	○ 사업운영 및 실험보조를 위한 필요한 지식 및 취급 경험
필요기술	○ 수산물 재료 취급 경험 ○ 관련 문서 작성 및 기록
직무수행 태도	○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노력 ○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○ 기존 구성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
관련 자격	○ 해당없음

V 기타사항

1. 대가의 청구 및 지급

- 가. 매월 인력파견 내역에 대하여 당월 말에 세금계산서 청구
- 나. 청구 시 서류 : 대가지급 요청 공문, 세금계산서
- 다. 용역수행 인력의 근무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.

2. 특수사항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가 해당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“발주기관”이 판단하는 경우 및 “계약상대자”의 파견인력이 업무수행을 태만하여 “발주기관”의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- 나. “계약상대자”로부터 본 과업에 투입된 파견인력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“발주기관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, “계약상대자”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다. 본 과업에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이든, 계약기간 동안이든 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과업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,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동 비밀유지의무는 해당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, 본 항의 의무는 본 과업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.

VI 과업수행 조건

1. 일반조건

- 가. 보고서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로 귀속된다.
- 나.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, 용역범위 변경 등 용역 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.
- 다. 발주처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과업대상, 과업범위 및 추진일정 등을 계약 상대방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
2. 과업 수행기준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, 관계법령,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나. 과업 수행 과정 중 결과 도출 및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발주자는 파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- 다.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.

3. 과업기간의 조정

- 가.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4. 과업내용의 조정

- 가. 본 과업내용 및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나.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.

5. 과업의 중지

가.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, 용역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6. 과업의 보고 및 협의

가. 과업수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.

나. 본 과업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운영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.

7. 보안책임

가. 과업수행자는 착수계(사업수행계획서)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.

나.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모든 정보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·대여할 수 없으며,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법적,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.

8.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가.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및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1)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
- 2)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- 3)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